



The New Era of Freedom of the Press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언론자유와 새로운 지평

Session 1

For Whom the Code of Practice Is?

Moderator

Heung Soo Park

CEO, Gangwon Information and Multimedia Corporation

Former Professor, Department of Mass Communication, Yonsei University

Invited Speakers

1. Zhou Yu Bo

President, People's Daily Online Korea Ltd. / China

▸ Current Disaster Reports in China

2. Tomoyuki Kataoka

Attorney at Law / Japan

▸ Reports on Suspected Crimes - 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Korea and Japan

3. Alexander Warzilek

Managing Director, Austrian Press Council / Austria

▸ Some Observations on the Ethical Reporting on Suicides - An Austrian Perspective

Current Disaster Reports in China

Zhou Yu Bo

President, People's Daily Online Korea Ltd., China

There have been three steps in disaster reporting for 65 years after establishing New China which are the Communists- oriented, Event-oriented and human-oriented. Each step has certain characteristic and reveals its own ethical issue. The ethical issues don't accord with humanity.

However, the disaster reporting in China has been improved into rationality and respect for human nature.

This paper shows the history of disaster reporting in China and tells each reporting model following the history.

And then, it includes the Wenchuan earthquake report, which occurred on May, 12, 2008, and indicates an ethical problem and finds out improvement direction.

중국의 재난보도 현황

저우위보

중국 인민일보 인민망 한국지국

신중국 수립 후 65년간의 재난보도를 당 본위, 사건 본위, 인간 본위라는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단계마다 독특한 특징과 그것에 상응한 윤리적 취향이 드러나는데 이러한 취향은 인간의 윤리 정신에 부합된 면도 있지만, 인간애가 결여되거나 황당무계한 부분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중국의 재난보도는 갈수록 이성과 인간성 존중의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우선 중국 재난보도의 역사 추이를 정리한 후 단계별로 보도모델을 추출했다. 그 후 당대 중국 재난보도 역사상 이정표적 의미를 지닌 2008년 ‘5.12’ 원찬대지진 보도를 통해 현 단계 중국 재난보도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원찬대지진 보도 속에 드러난 윤리적 문제를 지적하고 그것의 개선방향과 대책도 제시했다.

중국의 재난보도 현황

저우위보

중국 인민일보 인민망 한국지국

0. 들어가기

2008년 규모 8.0의 강진이 ‘재난보도’라는 용어를 중국인들의 시야에 뚜렷이 들어오게 했다. 그 계기가 아니었다면 ‘재난보도’라는 용어는 중국에서 계속 비주류의 모호한 지대에 머물렀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수많은 언론인이 재난보도란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사회의 발전에 따라 중국인들은 갈수록 생명의 소중함, 즉 재난 앞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생명이란 인식을 하게 되었다. 재난 속에 행해진 인도주의 구호와 인간 존엄성에 대한 배려로 인해 재난보도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이 점차 중국사회 전반에 확산하게 되었다. 아울러 죽음이란 도전 앞에 언론이 깊어져야 할 전문적 기능과 사회적 역할도 집중적 조명을 받기 시작했으며 그 중요성도 갈수록 인지되어 가고 있다.

“그 어떠한 경우에서든 역사는 한 시대가 다른 한 시대의 가치를 발견하는 기록”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 역사만큼 인류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는 것은 없다. 중국 재난보도가 걸어 온 역사를 회고하고 현황을 점검함으로써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개선점을 찾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1. 중국 재난보도의 역사 추이

신중국 수립 후 65년간의 재난보도를 당 본위, 사건 본위, 인간 본위라는 세 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다. 단계마다 독특한 특징과 그것에 상응한 윤리적 취향이 드러나는

데 이러한 취향은 인간의 윤리 정신에 부합된 면도 있지만, 인간애가 결여되거나 황당무계한 부분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중국의 재난보도는 갈수록 이성과 인간성 존중의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1949~1980년 당 본위의 일방적 폐쇄형 보도모델

신중국 수립 후 상당 기간 새 정권을 수호하기 위해 좌경화 사조와 ‘희소식을 전하되 나쁜 소식은 은폐’라는 사고방식에 따라 재난보도는 장기적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즉 엄밀히 통제하는 상태에 있었다.

1950년 4월 2일 중앙인민정부 신문총서에서 『생산 및 재난구조 보도에 대한 지시』를 발표하여 “재난구조에 대해 보도할 때, 각 지역은 재난구조 실적과 경험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재난 상황 자체에 역점을 두고 보도하지 않는다”고 요구했다. 이러한 정책은 일반적으로 “재난이 뉴스가 아니고 재난구조와 구호야말로 뉴스다”라는 의미로 이해되고 실행됐다. 따라서 이 단계의 재난보도는 당의 선전 수요에 따라 당과 마오쩌둥 주석의 현명한 지도와 ‘사회주의 대가족의 따뜻함’을 강조하고, 결국에는 영웅주의 혹은 공산주의 우월성으로 재난을 극복했다는 논리로 발전하곤 했다.

이 시기의 재난보도는 대략적으로 “당중앙과 마오 주석의 친절한 관심과 배려 + 국가에서 막대한 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을 재난구호에 투입 + 피해 지역 주민이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재난과 사투를 벌임 + 영웅화된 인물이 구호 활동에서 뛰어난 공적을 쌓음”이란 고도 정치화의 보도모델을 답습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보도는 원천적으로 재난 현황, 이재민의 운명, 피해 결과 등을 희석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고도 정치화된 이러한 보도모델은 재난보도를 일방적 소식 전달과 모호한 사건 재현에 머무르게 해서 독자로 하여금 재난에 대한 명확하고 전면적인 이해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재난 자체가 가진 비극적 의미와 사회에 대한 시사점도 드러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보도모델의 영향으로 인해 이 시기 재난보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냈다.

첫째, 당국과 집단적 의지를 매우 중요시해서 이재민은 ‘집단’으로서의 모습만 표현될 뿐 개개인의 표정은 없다.

둘째, 당국의 시각으로 영웅적 리더를 부각하고 일반인을 간과하며 이재민 전체의 생존 실태를 경시 혹은 무시한다.

셋째, 영웅적 리더를 완벽한 인간으로 신격화해서 인간의 혁명 정신을 무소불능의 경지로 끌어올린다.

1954년의 양쯔강 대홍수 보도, 1961년 전후의 3년 자연재해 보도, 1970년의 윈난 성

하이퉁(云南海通) 대지진 보도와 1976년의 탕산(唐山) 대지진 보도는 이러한 보도모델의 전형으로 알려졌다.

(2) 1980~2003년 사건 본위의 다차원 객관적 보도모델

20세기 80년대에 들어 재난보도는 점차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다. ‘사상 해방’과 ‘실사 구시’라는 지도 노선의 확립에 따라 한때 금기였던 재난보도도 일정 정도의 개방을 맞이하게 되었다.

1987년 7월 18일 중공중앙선전부(이하 중선부라 약칭)에서 『뉴스보도에서의 몇 가지 문제 개선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이 문건의 제5조에 “중대 자연재해(지진, 홍수 등)와 재난성 사고에 대해 신속히 보도해야 한다”라는 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이어 1989년 1월 28일, 중선부에서는 또 다시 『돌발사건 보도 개선에 대한 통지문』을 공포하여 “뉴스보도의 실효성을 위해 돌발사건에 대해 성격, 공개범위에 따라 단계적 보도를 진행할 수 있다. 언론사가 중앙 혹은 지방 관계부처가 제공하거나 기자가 직접 취재한 정확한 소식을 입수한 후 최대한 빨리 속보를 내보내야 한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사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간단명료하며 정확한 보도를 낸 후, 사태의 추이에 따라 후속 보도를 진행한다”라고 지시했다. 이로 보아 당과 정부가 점차 중국 국민의 알권리를 중시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재난보도의 정보량이 갈수록 풍부해지고 인명과 재산 피해, 재난구조, 경험과 교훈, 심지어 원인분석과 시사점 탐구 모두가 보도의 중요한 내용이 되었다.

1987년 따싱안링(大興安嶺) 특대형화재 보도 시리즈인 ‘빨간 경고’, ‘검정 영탄곡’, ‘푸른 비애’는 재난을 직시하고 여실히 재현했을 뿐 아니라 재난 배후에 숨겨져 있는 관료체제, 인간의 운명과 환경 파괴 실상을 심도 있게 고발했다. 1998년의 양쯔강 특대형 홍수 보도는 수해(水害)와 재난구조를 파노라마적으로 표현한 후, 지나친 벌목, 호수 간척, 생태환경 파괴를 대홍수를 초래한 인위적 원인으로 냉정하게 지적함으로써 세인들에게 반성할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또한, 1999년 11월 24일 산둥 성 옌타이시 근처에 ‘따쑤(大舜)호’ 침몰 사건이 발생하여 270명의 인명 피해가 났다. 이 사건에 대해 중국 국가통신사인 신화사는 연일 해난상황, 구조과정, 인양작업 진전, 원인조사 및 사후조치 등에 대해 지속해서 보도하여 국내외 각계가 ‘11·24해난’을 알고 이해하는 공식 채널이 된 바 있다.

결론적으로 이 시기 재난보도에 있어 가장 큰 진보는 정보 내용이 더는 일방적 폐쇄형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다차원으로 표현되고 전송되어 국민들의 알권리를 상대적으로 충족시킨 것이다. 이러한 보도모델의 장점은 객관성, 시효성, 깊이와 이성을 부각한 데 있다.

하지만 이 시기 재난보도의 단점도 간과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전통 고정관념과 뉴스보

도 체제의 제한으로 인해 언론은 재난에 직면했을 때 여전히 신중하고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기 쉬운 점, 정보의 전달에만 만족하고 생명에 대한 무관심이 여전한 점, 인문 정신에 입각한 배려가 결여된 점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단점들은 재난보도의 형식화를 초래했을 뿐 아니라 보도 시각, 언어 표현 등에 있어서 인간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게 하였다.

(3) 2003년 이후 인간 본위의 전면 개방형 보도모델

앞의 두 단계에 비해 2003년 이후의 재난보도 모델은 인간 중심의 전면 개방형 모델로 바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02년 11월 중국 남부 광둥(廣東) 성에서 발생, 홍콩을 거쳐 세계로 확산된 전염병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는 전 세계인을 공포에 떨게 했다. 초기에 사스 발생과 유행 상황에 대한 언론 보도를 통제하여 더욱 큰 범위로의 빠른 확산을 초래한 후, 중국 당국은 더는 소식을 봉쇄하지 않고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개적으로 보도하는 방침을 세웠다. 그 후 일련의 정책과 조례를 제정하여 정보의 공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하였다. 2003년 『공공위생 돌발사건 응급조례』가 발표되고 2008년 5월 1일 『정부 정보 공개조례』를 실시하게 되었다. 또한, 정부 기관 대변인 제도의 확립, 관료 문책제의 실행 등이 점차로 재난사건의 정보를 더욱 효과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재난보도의 충분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한편 미디어의 다원화와 경쟁이 점점 치열해짐에 따라 인터넷, 스마트폰 등 뉴미디어가 급격히 부상한 것은 언론계로 하여금 공신력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재난보도를 부단히 개선하도록 촉진했다. 사건 본위의 다차원 객관적 보도모델에 비해 2003년 이후의 재난보도 내용은 그 넓이와 깊이 면에서 갈수록 확대되어 정보의 완전한 개방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2007년 10월에 열린 중국공산당 제17회 전국대표대회에서 ‘인간 본위’의 집권 이념을 확립한 것도 언론의 인간 본위와 보도의 인문 정신을 더욱 고양하게 했다.

인간 본위의 전면 개방형 보도모델은 재난 자체와 구조 활동에 대한 보도도 중요시하지만, 보도과정 내내 사회적 배려자의 자세로 피해주민들이 처한 곤경과 정신상태를 살피고 인간애와 인간미가 재난보도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한다. 앞의 두 단계의 보도모델에 비해 인간 본위의 전면 개방형 보도모델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특징을 드러냈다.

첫째, 인간 본위의 보도는 형식화 보도모델을 탈피하여 재난 속의 인간을 ‘집단’이 아닌 ‘개체’로 표현함으로써 인문 정신에 따라 다양한 인물의 생존 실태를 복원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인간 본위의 보도는 관 본위의 보도모델을 탈피하여 ‘영웅신화’와 ‘지도자 홍보’를 배제함으로써 재난 배후에 가려진 인간미와 인간애를 충분히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특징은 2008년의 눈피해 보도와 '5.12' 원촨대지진 보도에서 충분히 구현되었다. 특히 원촨대지진 보도는 중국의 재난보도를 한층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단연 당대 중국 재난보도 역사상 굵직한 이정표가 되기도 했다.

2. 원촨대지진 보도를 통해 본 현 단계 재난보도의 특징

2008년 '5.12' 원촨대지진이 발생한 후 중국의 재난보도는 질적으로든 양적으로든 괄목할 만한 진보를 보여 국내외적으로 호평을 받았다. 전과 비교해 이번 재난보도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1) 뉴스보도 관리방식의 변화

예전에 중대한 돌발사건이 일어나면 뉴스의 관리 당국, 특히 일부 지방의 뉴스 관리부처가 왕왕 자신의 부처 혹은 지방의 이익에서 출발해 언론사가 신속히 뉴스보도를 하는 것을 막곤 했다. 따라서 공식 소식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일반 대중은 각종 비공식 루트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접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形形色색의 유언비어, 허위 소식이 난무해 대중들의 불만을 샀을 뿐 아니라 당과 정부의 이미지도 크게 훼손되곤 했다. 하지만 인터넷이 발달한 오늘날 같은 경우에 공신력을 가진 언론사가 뉴스를 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각종 정보가 인터넷으로 신속히 전해지는 것을 막기 어렵기 마련이다. 뉴스 관리 당국은 이렇게 하다가 자칫하면 발언권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수동적인 국면에 몰아넣을 확률이 높다.

이번 원촨대지진 보도에 대해 뉴스 관리 당국은 뉴스 본연의 법칙에 따라 각급 언론사가 전면적이고 신속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보도 자유를 보장했다. 아울러 각종 기자회견을 통해 유용한 정보, 갖가지 의혹에 대한 해답도 실시간으로 제공해 주었다. 그 결과 일선 기자들은 뛰어난 능력과 책임감을 보여 신속하고 정확한 뉴스보도로 국민들의 마음을 다잡고 사기를 북돋우는 데 큰 힘을 발휘했다.

(2) 뉴스보도 절차의 변화

상당기간 동안 중국에서 중대한 사건에 대한 보도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웠다. 특정 언론사를 지정하여 언제, 어떻게 보도하는지까지 통제하곤 했다. 이런 절차를 거친

보도가 난 후, 설령 사실관계가 명확하더라도 뉴스보도 본연의 법칙을 위배했기 때문에 공신력이 떨어지고 대중들의 불신을 사기 일쑤였다.

이번 원찬대지진 보도에 대해 관계 당국은 특정 언론사를 지정하지 않고 무엇을 어떻게 보도하는지도 규제하지 않았다. 그 결과 각급 언론사가 자신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해 다양하고 차별화된 뉴스 콘텐츠를 생산해 낼 수 있었다. 아울러 뉴스보도의 공신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높아졌기에 언론사에 대한 대중들의 만족도도 크게 향상되었다.

(3) 해외 언론사와의 관계 개선

글로벌화와 중국의 대외개방 추진에 따라 중국과 해외 언론 간의 관계도 점점 변화하기 시작했다. 일부 해외 언론이 중국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가 하면 뉴스 본연의 법칙에 따라 중국에 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내는 해외 언론도 적지 않다. 해외 언론들이 중국을 어떻게 바라보든지 간에 중국은 그들과 소통을 해야 한다.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서만이 서로 간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해외 언론들이 중국 티베트에 대해 왜곡된 보도를 자주 내는 것은 그들이 가진 편견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국이 그들에게 신속한 취재보도를 허용하지 않는 정책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이번 원찬대지진이 발생한 후 중국당국은 해외 언론들이 자유롭게 피해 지역에 가서 취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 결과 그들의 편견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그들은 피해 지역에서 보고 들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많이 전했고, 중국정부가 이재민들을 구호하기 위해 얼마나 큰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여실히 보도했다. 이는 세계인들에게 중국 정부와 국민의 좋은 이미지를 부각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전 세계인은 중국의 재난구호에 진심 어린 원조와 도움의 손길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4) 전통매체와 뉴미디어 간의 쌍방향 소통

흔히 전통매체와 인터넷, 블로그 등으로 대표되는 뉴미디어 간에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쌍방향 소통이 부족하다고 한다. 중국에서 상당수 네티즌이 전통매체의 보도에 불신을 가진다. 반면 전통매체는 인터넷으로 전해지는 많은 소식과 정보에 대해 경시, 내지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원찬대지진 때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한편 많은 네티즌이 중국 중앙티브이방송국인 CCTV를 비롯한 전통매체가 낸 많은 보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 나머지 인터넷으로 이들에게 세부내용까지 제보했다. 다른 한편으로 전통매체도 인터넷 핫이슈에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불거진 의혹을 해소함으로써 유연비어가 만연하는 현상을 억제하였다. 이러한 선순환적 소통으로 전통매체와 뉴미디어는 서로의 장단점을 상호 보완하면서 뉴스 수용자들이 인정하는 더욱 큰 공신력을 얻게 되었다. 아울러 수용자들도 신속하고 정확한 뉴스와 정보에 근거하여 자신들의 판단과 행동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번 지진 후 온라인모금, 실종가족 찾기, 온라인추모, 고아 돌보기 등 시민운동이 성공적으로 조직된 것도 전통매체와 뉴미디어 간의 양호한 소통 덕분이다.

3. 재난보도의 윤리적 문제와 개선 방향

국내외 반응으로 보아 원찬대지진 보도는 의심할 여지가 없이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이 속에 드러난 윤리적 충돌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윤리적 문제는 주로 개인의 생명권 무시, 보도로 인한 심리적 상해, 구호활동 방해 등으로 대표된다.

(1) 개인의 생명권과 국민의 알권리 간의 충돌

2008년 5월 17일 러시아구조대가 지진 발생 5일 만에 첫 번째 생존자를 구출했을 때 기자들은 대거 몰려와 카메라 플래시와 강한 조명으로 생존자를 비추었다. 이때 한 구조대원이 화를 내며 자신의 큰 손으로 생존자의 눈을 가려주면서 기자들에게 강한 빛으로 생존자의 눈을 다치지 말라고 호통친 일이 있었다.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피해 지역 상황을 전하고 싶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러한 취재방식은 이미 생존자의 생명권을 침해한 것이 분명하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명권은 알권리보다 훨씬 중요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2) 뉴스보도로 심리적 상해를 입은 사람들

원찬대지진 때 네티즌에 의해 ‘중국에서 가장 강한 경찰’이라 불리는 여경이 있었다. 그녀는 지진으로 부모와 딸을 비롯한 십여 명의 가족을 잃었다. 엄청난 고통을 당한 그녀는 슬퍼할 겨를이 없이 수일째 피해 지역 일선에서 구조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자로부터 “이재민을 구조할 때 어른과 어린이가 보이면 자신의 부모와 딸이 생각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받자 한 마디도 말을 못한 채 갑자기 쓰러졌다.

흔히 기자들이 보도효과를 높이기 위해 극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취재대상이 가진 심

리상태에 대해 자주 질문하곤 한다.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질문 자체가 또다시 취재 대상에게 심리적 상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하기 쉽다. 또한, 같은 취재대상에 대해 여러 매체가 반복적으로 같은 질문을 하는 것도 매우 잔인한 것임을 모르는 기자가 많다. 이로 보아 재난보도의 특수성과 기자들이 지켜야 할 보도윤리에 대한 교육이 매우 시급하다.

(3) 구호활동을 방해하는 취재행위

원찬대지진 구조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목격됐다. 구조대원들이 단 일분일초라도 벌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기자 한 명이 갑자기 나타나 작업을 중단시키며 인터뷰에 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구조대원들이 부상자를 안전한 곳으로 이송할 때 많은 기자가 몰려와 갖가지 질문을 하며 취재하려고 하는 모습도 종종 보였다.

이와 같은 부적절한 취재행위는 타인의 생명권에 대한 무시로 구호활동을 방해하는 수 밖에 없고 지양해야 할 행위들이다.

원찬대지진 보도에 나타난 상기 윤리적 문제는 중국 언론인들에게 새로운 과제를 제시했다. 그것은 바로 매체 간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오늘날 언론인들이 취재대상을 어떤 태도로 바라볼 것이고, 어떤 뉴스 작품으로 수용자들을 찾아갈 것이며, 어떠한 시각으로 자신들의 직업을 재조명하는가가 될 것이다.

4. 나오기

중국의 재난보도는 인간 중심의 보도모델이 정착된 데에 이르기까지 65년의 진화 과정을 거쳤다. 특히 최근 연간 각종 공공위생 돌발사건과 천재지변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지역사회 공공역량의 일종으로 언론은 갈수록 큰 역할을 발휘하게 되었다. 한편 재난보도의 개념이 중국에서 명확하게 정립됨에 따라 그것의 발전이 이미 직접 중국 언론이나 사회의 전반적 진보를 가져왔다.

향후 『중국 언론인 직업윤리 수칙』을 수정하고 언론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하며 재난보도 자원의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신경보 미디어연구 - 재난보도 2.0(新京报传媒研究 - 灾难报道2.0)』, 신경보미디어 연구원(新京报传媒研究院) 편저, 남방일보출판사(南方日报出版社), 2013
2. 『재난보도 논제 연구(灾难报道论题研究)』,刘海明·王欢妮 著, 상무인서관(商务印书馆), 2012
3. 『재난을 어떻게 보도하는가(灾难如何报道)』, 李梓新 편저, 남방일보출판사(南方日报出版社), 2009
4. 『중국매체 재난보도 수첩(中国媒体灾难报道手册)』, 新浪传媒 편저, 인민일보출판사(人民日报出版社), 2014
5. 『도덕과 뉴스(道德与新闻)』, Karen Sanders 著, 洪伟 외 옮김, 복단대학출판사(复旦大学出版社), 2007
6. 『현대 서양 뉴스보도 규범(当代西方新闻报道规范)』, 张宸 편저, 복단대학출판사(复旦大学出版社), 2008

Session 1 토론

‘언론보도의 가이드라인, 누구를 위한 것인가?’

◆ 박흥수 (사회자, 한국 강원정보문화원 원장)

사회자로 초청해주신 존경하는 박용상 위원장님, 부위원장님들과 중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용상 위원장님께서 개회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중재제도나 법과 규정들을 재고해야할 시대입니다. 증기기관에 의해 추동되었던 산업사회 시대를 넘어 정보화 사회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정보화 사회는 반도체, 디지털 압축 기술, 광섬유라는 세 가지 새로운 발명으로 인해 급격한 변화를 맞았습니다.

방송매체 또한 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1세대의 공중파와 지상파에서 2세대의 유선 방송, 3세대의 위성방송, 4세대의 DMB를 넘어서 5세대는 IPTV의 시대, 그리고 6세대에는 완전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하는 스마트 TV가 등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앞장서서 통신기술을 이끌어왔습니다. 제가 미국 시카고 대학에 있을 때는 메가바이트 시대였고, 그 다음은 기가바이트 시대였으며 오늘날에는 본격적으로 테라바이트 시대에 와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정보가 십시간에 전세계 70억 인구에게 확산되는 시대인 만큼, 기존의 제도나 법, 혹은 기타 인간의 태도나 행위를 규율하는 제도가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새로운 변화가 대한민국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시작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1 세션 1 주제 토론 ◀ ‘중국 재난보도의 현황 연구’

◆ Arik Bachar (이스라엘 언론평의회 사무총장)

중국의 한 지방인 티베트에서 언론 보도가 상당부분 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당국은 외신 기자가 이 지역에 출입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언론의 재난재해 관련 보도가 객관성을 획득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Zhou Yu Bo (중국 인민망 한국 지사장)

말씀하신대로 티베트에 유혈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외신기자의 출입은 금지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 정부의 보도 통제가 언론 보도의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부정적이라는데도 동의합니다. 중국의 언론 매체가 외신들에게 공신력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사실 역시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중국의 내신 기자들이 보도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국 기자들은 양심을 바탕으로 중국 국민들과 외신 기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 기자들의 적극적 노력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Khan Muhammad Shafqat (파키스탄 언론평의회 위원장)

중국 재난 보도에서 나타나는 언론의 윤리적 문제를 제재할 법적 메커니즘이 존재하는 지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Zhou Yu Bo (중국 인민망 한국 지사장)

중국의 경우 정부가 발표하는 최신 현황 자료에 따라 재난 보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큰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례로 윈난성 대지진에서 건물에

깔린 채 3일 동안 의식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에게 언론이 무수히 많은 질문을 하는 장면이 보도되면서 국민의 지탄을 샀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원난성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날이 결혼식이었던 현지 언론사의 한 여기자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현장으로 찾아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언론사가 대중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보도 행태를 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 언론이 자체적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김 종 랑 (한국 언론중재위원회 전북중재위원)

저는 한국의 재난보도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 대한민국에서 안타까운 재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국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었는지, 또 한국 언론 보도 행태에서 느낀 것은 무엇인지, 한국 언론의 재난 보도 중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할 것 같은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Zhou Yu Bo (중국 인민망 한국 지사장)

중국에서도 4월 16일의 세월호 참사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중국 언론, 그리고 국민들의 반응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중국의 언론은 이 재난 사고에 큰 관심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저희 인민망에서도 9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 100여개의 기사와 400여장의 취재사진을 보도했습니다. 언론의 적극적인 보도와 달리 세월호 참사가 중국 국민의 전국적인 관심을 끌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세월호 참사에 대처하는 대한민국 언론과 국민들의 반응에 대해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그리고 사건이 터진지 얼마 되지 않아 故 유병언 씨와 정부, 가족에 대한 많은 보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긍정적 영향을 끼친 보도도 존재하긴 했지만, 한국의 뉴스 보도 프로그램에는 추측성, 유연비어성 보도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언론의 근거 없는 보도가 많아짐에 따라 국민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 언론은 재난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기 이전까지 아무런 사실도 보도하지 않습니다. 한국 언론의 경우는 정부의 발표 이전에도 무수히 많은 보도를 내보냄에 따라 국민들이 정부의 발표를 믿지 않는 상황을 유발하는 같습니다. 대한민국처럼 수사기간 중에 언론의 공신력 없는 보도가 이어질 경우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기 힘들기에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Reports on Suspected Crimes

- 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Korea and Japan

Tomoyuki Kataoka
Attorney at Law, Japan

I. Reports using real names for suspects

1. Japan

In media practice, suspects' real identities are used in press reports. However, anonymous identities can be used in cases involving youth crimes, mentally ill criminals, or misdemeanors exceptionally. Case laws are adjudicated based on the balancing test by comparing privacy rights and the protection of reputation against freedom of expression; however, in many cases real identities are used.

Academic theories are more favorable to using real names in reports on suspected crimes, while some theories do support using anonymous identities. However, even if anonymous identities are used, there are some case laws which found that defamation was still possible when the suspects' identity could be specified.

2. Korea

The established principle is to use anonymous reports. This may be partly due to Article 126 of Korea's Criminal Law on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which prevents investigating agencies from publishing facts of suspected crimes before a

trial. Case laws acknowledge that the use of real identities by the media does not necessarily contribute to the public interest, hinting that the courts are closer to the anonymous reports principle. At the same time, the courts also allow the use of real names by the media using the balancing test in cases involving public figures or public interests if the cases concern 'exceptional cases' or 'topical interests.'

3. Comparing Japan to Korea

In the report on suspected crimes, the principles and exceptions of Japan and Korea are polar-opposite. While case laws of the two countries similarly use the balancing test when there is a conflict between freedom of expression and privacy rights such as the protection of reputation, Korea seems to put more emphasis on anonymous reports in value judgments.

II. Reports using real names for victims

1. Japan

These are treated on a case-by-case basis. Anonymous reports are the norm in reporting on victims of sexual crimes or mentally ill victims, etc. However, real identities are commonly used for victims of simple and occasional crimes. There was a heated debate in Japan surrounding the use of real names of criminal victims by the press reports with the enactment of the Basic Act for Criminal Victims in 2004.

2. Korea

With the court's decision in the "Naju rapist" case, there was a strong public consensus to protect the victim's identity.

언론의 피의사실 보도 행태 - 일본과 한국의 비교를 중심으로

카타오카 토모유키

일본 변호사, 바스코 다 가마 법률회계사무소

제 1 피의자의 실명보도

1. 일본

언론실무상 실명보도가 원칙. 단 예외적으로 소년사건, 정신장애자 사건,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익명보도가 원칙이다.

판례는 명예권, 사생활권 등과 표현의 자유를 비교하는 이익 균형론의 방법으로 판단하는데, 결론적으로 실명 보도 원칙론을 사실상 추인하는 경우가 많다.

학설은 실명보도 원칙론이 우세한 것으로 보이나, 일부의 학설에서는 익명보도 원칙론도 있다.

단, 물론 판례상 익명보도를 해도 대상자의 특정성이 인정되고 명예 훼손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

2. 한국

언론실무상, 익명보도가 원칙인데,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가 존재함에 따라, 수사기관의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판례는 실명보도가 반드시 공공성을 지닌 것은 아니라며 익명보도원칙론에 가까운 인식을 나타내면서, 이익균형론을 이용하여 판단하여 공인, 공공보도에 관한 “비범성” 또는 “시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명보도를 허용하고 있다.

3. 일본과 한국 비교

언론 실무는 원칙과 예외가 정반대이다.

판례는 명예권 등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라는 대립 이익에 대해 이익 균형론을 이용하여 판단하고 있는 점은 유사하지만, 가치 판단과 결론에 있어서는 한국이 익명보도를 중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제 2 피해자의 실명보도

1. 일본

사건에 따라 다르다(Case by case). 성범죄 피해자, 정신 장애가 있는 피해자 등은 익명 보도하는 한편, 단순 일회성 사건의 피해자는 대부분 실명보도로 보도한다.

일본에서도 2004년 제정된 “범죄 피해자 등 기본법” 제정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 피해자의 실명보도의 논란이 심화되었다.

2. 한국

일련의 "나주 성폭행 사건" 판결이 계기가 되어 사건 보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요청이 강하게 논의됐다.

언론의 피의 사실 보도 - 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중심으로

카타오카 토모유키

일본변호사, 바스코 다 가마 법률회계사무소

제 1 피의자의 실명보도

1. 일본

(1) 실무

가. 원칙

(가) 실명보도가 원칙

(나) 이유 (예 : 아사히신문 「사건의 취재와 보도 2012」)

- 보도 내용의 기본 요소이므로
-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 익명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 권력을 감시하기 위해

단, 이 모두에 대해 비판이 있다.

(예 : 츠쿠다 카츠히코 「명예훼손의 법률실무[제2판]」 150 페이지 이하)

(다) 판례

- 최고재판소의 판례 중, 직접적으로 이러한 논점을 다룬 것은 찾아볼 수 없었다.
- 단, 나고야 고등재판소 판결(1990. 12. 13.)¹⁾은 업무상 과실치사 용의의

1) 이 나고야 고등재판소 판결은, 비교형량의 결과에 따라서는, 실명보도한 것 자체를 위법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츠쿠다 카츠히코 「명예훼손의 법률실무 [제2판]」 155 페이지).

서류 송치 건과 관련 신문사가 실명보도를 한 케이스로서 비교형량론에 입각하여 본건 보도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부정하였다.

- “일반적으로 범죄 보도에 대해서는 기사화 되는 입장, 특히 범죄 주체가 되는 측에서 익명 또는 가명으로 기사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으나, 현재 사회 일반적인 의식으로 보아 상기 보도에 있어서의 피의자의 특징은 범죄 뉴스의 기본적 요소로서, 범죄 사실 자체와 함께 공공의 중요한 관심사인 것으로 관념화되어 있으므로(변론의 전 취지에 의해 인정됨), 피의자를 실명으로 할지의 여부를 포함하여 그 특징의 방법, 정도의 문제는, 일의적(一義的)으로 정할 수 없으며, 결국에는 범죄 사실의 양태, 정도 및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특성(공인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피해자 측의 피해의 심정, 독자의 의식, 감정 등을 비교고량하고 또한 인권의 존중과 보도의 자유 내지 알 권리의 옹호와 의 조화를 감안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해 나갈 수밖에 없다.”, “실명에 의한 각 사의 본건 보도는, 당시의 보도의 실정, 본건 보도의 양태, 피의 사실의 정도, 양태, 항소인의 책임 있는 사회적 지위, 피의자 측의 심정, 사회 감정 등으로 보아, 항소인에게 있어 명예스러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은 알겠으나, 이것만으로 바로 위법이라고 해석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 한편, 도쿄지방법판소 판결(1990년 3월 23일)은 실명보도 그 자체의 책임을 추궁한 민사 소송으로서, “범죄보도에 있어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범죄 사실 뿐만 아니라 이와 일정한 관련성을 가지는 사실도 포함하여, 피의자의 성명이나 얼굴 사진이 관련성을 가지지 않는다고까지는 할 수 없다”라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부정하였다.
- 결국, 판결은 실명보도를 위법시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통상적으로는 이를 적법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예외

(가) 소년 사건

① 실무

- 범죄소년(14세 이상), 촉법소년(14세 미만)은 익명보도
- 발각 시에 성년(20세)이 되어도, 사법 절차의 과정에서 성년이 되어도 모두 익명보도

② 소년법 61조의 규정

- 기사 등의 게재 금지에 대해, “가정재판소의 심판에 붙여진 소년 또는 소년일 경우, 행한 죄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자에 대해서는 성명, 연령, 직업, 주거, 용모 등에 의해 그 자가 해당 사건의 본인임을 추지할 수 있는 기사 또는 사진을 신문, 기타 출판물에 게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단, 심판 개시 결정 전인 자나, 공소 제기 전인 자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또 출판물 게재만을 금지하고 있다.
- 벌칙은 정해져 있지 않다.

③ 실무상의 예외

- 역사적 중대 사건
- 도주 중으로 다시 중대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강한 때
- 18세 이상의 소년 범죄로서 사형이 확정된 때

(나) 정신장애자의 사건

① 실무

- 체포된 피의자가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자(형법39조1항)인 것이 명백해진 경우에는 익명보도를 원칙으로 한다.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익명보도를 검토한다.
- 당초 실명보도를 하더라도, 취재 등에 의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지면 익명보도로 전환한다(한편, 반대로 익명보도에서 실명보도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다).

② 이유

- 사회적 편견에 의한 본인이나 가족에 대한 불이익을 피하고 본인이 사회에 복귀한 경우를 배려하기 위해

③ 심신 미약자(형법 39조 2항)

- 실명보도가 원칙

(다) 경미한 사건

① 실무

- 경미한 범죄, 경과실 사건에 있어서의 피의자는 익명보도를 원칙으로 한다.

② 이유

- 실명의 필요성에 비해 당사자에게 주는 불이익이 크기 때문

③ 실무상의 예외

- 피의자가 공인·공적 존재일 경우에는 실명. 판례로서 샷포로 변호사회 전 부회장의 택시 운전수에 대한 폭행 사건

(2) 학설

가. 익명보도 원칙론

(가) 「범죄보도의 범죄」(학양서방)

- 범죄 보도는 원칙적으로 익명으로 해야 한다.
- 인권 경시의 보도를 개혁하기 위해 사건 보도는 익명을 원칙으로 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 실명보도로 하면 좋을지를 검토하면 된다. 예를 들어, 공적인 임무에 있는 자가 그 임무의 적성을 의심케 하는 행위를 한 경우

(나) 일본변호사연합회·1987년 11월의 ‘인권과 보도에 관한 선언’

- 범죄 보도에 있어서는 수사 정보에 대한 안이한 의존을 그만 두고 보도의 필요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함과 동시에 원칙적으로 익명보도의 실현을 위해 익명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망

(다) 츠쿠다 카츠히코(佃克彦, つくだ・かつひこ)

- 「명예훼손의 법률 실무[제2판]」 157~158페이지
- 실명보도되지 않을 권리 내지 이익은 명예권이나 프라이버시권 등의 인격권의 일부를 이룬다. 그리고 실명보도의 긍정 여부는 명예훼손 법리 내지 프라이버시 보호 법리 중 면책 사유로서의 공공성의 유무(사실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는지의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행해야 한다.

나. 실명보도 원칙론

(가) 일본신문협회의 견해

- 기사의 정확성과 독자에게 주는 설득력
- 범죄의 예방, 억지 효과가 있다
-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감시 기능을 하고 있다.

(3) 익명보도의 경우의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례의 정리

*** 최고재판소 판결 (2003년 3월 14일)**

- 미성년 당시에 청년 4명을 살해하였다고 하여 살인, 강도 살인 등의 죄로 기소된 피고인(본건 기사가 게재된 당시에는 이미 성인)이 주간지의 기사에서 쉽게 동일 인물로 추지될 수 있는 가명을 사용하여 범행 양태(범인 정보), 비행이력, 교우 관계 등(이력 정보)이 기재되어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출판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
- 판결은 익명보도의 대상자의 특정성에 대해 “피상고인과 면식이 있고 또한 범인 정보 혹은 피상고인의 이력정보를 아는 자는 그 지식을 단서로 본건 기사가 피상고인에 관한 기사임을 추지할 수 있으며, 본건 기사의 독자 중에 이러한 자들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러한 독자들 중에, 본건 기사를 읽음으로써 비로소 피상고인에 관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 이상의 범인 정보나 이력 정보를 안 자가 있을 가능성도 부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여, 면식이 있는 자나 정보를 안 자가 보도를 접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특정성을 긍정하고 있다. 즉, 상당히 완만히 인정되는 것이 된다.

2. 한국

(1) 실무

- 익명보도가 원칙

(2) 형법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

-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단, 기소된 예는 없으며, 형사 판례도 없다.

(3) 익명보도에 관한 판례

가. 대법원 1998년 7월 14일 판결

-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해 반드시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며,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에 관한 보도가 반드시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지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나. 공인

- 시장, 농림부 장관, 국립대학교 교수, 전직 언론인, 도의회 의원, 검사 등의 공인에 대해 국민의 정당한 관심 사안으로서, 실명보도를 허용한다는 것이 판례

다. 실명보도가 허용되는 범위

- 대법원 2009년 9월 10일 판결
- 제 요소를 종합·참작하는 비교형량론에 입각하여 이하와 같은 기준을 정립하였다.
-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지니는 중대한 범죄에 관한 것이나 사안의 중대성이 그것보다 다소 떨어진다고 하여도, 정치·사회·경제·문화적 측면에서 ‘비범성’을 가지고 있고 공공의 문제로서 중요성을 지니거나 공공의 이익과 연관성을 지닐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지니는 공적 인물로서의 희생과 그 업무 내지 활동과의 연관성을 위해 일반 범죄로서의 평범한 수준을 넘어 공공의 문제로서 중요성을 지니게 되는 등 ‘시사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개별 법률로 별도 정해져 있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훨씬 우월하다고 보고,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고 보도하는 것도 허용된다.”

3. 일본과 한국의 비교

- (1) 판례상 한국에서는 익명보도를 원칙으로 하는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편, 일본에서는 이러한 판례가 없다.
- (2) 양국의 판례 모두 대상자의 명예, 프라이버시 등과 보도의 자유, 알 권리 등과의 조정시에 이익형량론을 사용하여 판단하고 있다.
- (3) 이상을 살펴보면, 이익형량론이라는 동일한 수법을 사용하면서도 한국에서는 익명보도가, 일본에서는 실명보도가 사실상 중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 2 피해자의 실명보도

1. 일본

(1) 프라이버시 침해가 문제가 되나 범죄의 성질 등의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2) 성범죄의 피해자, 정신 장애가 있는 피해자 등

- 피해를 당한 것 자체가 타인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 사생활상의 사실에 해당되므로 익명보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²⁾
- 또한, 아동 매춘·성범죄의 피해자가 18세 미만인 아동일 경우, 그 성명 등에 의해 해당 사건에 관한 자임을 추지할 수 있는 기사 등을 게재 등을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아동 매춘, 아동 포르노에 관한 행위 등의 규제 및 처벌 및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조).

(3) 날치기(절도), 빈집털이(주거 침입 및 절도), 교통사고와 같은 단순한 일과성 사건의 피해자

- 많은 경우 비교형량에 의해 프라이버시 침해가 되지 않는다. 원래 타인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 사생활상의 사실인 프라이버시에 해당되지 않거나, 가령 이에 해당된다고 하여도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수인 한도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4) 범죄피해자등기본법, 범죄피해자등기본계획

- 2004년에 성립된 동법은 벌칙 등은 없으나, 국민의 책무로서 “국민은, 범죄피해자 등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함과 동시에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범죄피해자 등을 위한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동법6조)
- 또한 동법 8조가 정부에 책정을 의무화하고 있는 ‘범죄피해자등기본계획’에서는, “경찰에 의한 피해자의 실명 발표, 익명 발표에 대해서는 범죄 피해자 등의 익명 발표를 원하는 의견과 매스컴에 의한 보도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를 이유로 하는 실명 발표에 대한 요망을 바탕으로 프라이버시의 보호, 발표하는 것

2) 예를 들면 아사히신문은 ‘사건의 취재와 보도 2012’에서 이하와 같이 취급을 정하고 있다.

- 강간, 강제 추행, 성적학대 등 성범죄의 피해자는 익명을 원칙으로 하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작성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 사망 사건인 경우 첫 보도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실명으로 한다. 그 후에는 성범죄 부분을 언급할 필요가 어느 정도인지를 고려하여 실명으로 할지 익명으로 할지를 신중하게 판단한다.
- 아동이나 젊은 여성의 납치 사건 등으로 성적인 동기가 의심될 경우에는 성 피해가 명확하지 않아도 즉시 익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성범죄의 내용을 언급할 경우에는 단적으로 간결하게 전한다.

의 공익성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서, 개별 구체적인 안건마다 적절한 발표 내용이 되도록 배려한다.”라고 정해져 있다. 즉, 경찰에 의해 마스크 등에 사건을 공표 시에, 실명·익명의 결정을 공표하는 경찰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그렇기 때문에, 이후 경찰 발표에서 피해자를 익명으로 발표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에 미디어는 경찰에 대해 실명 발표를 요구하고, 그 후에 취재를 하여 피해자의 의향 등을 확인 후에 미디어가 실명·익명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2. 한국

- ‘나주 성폭행 사건’³⁾ 판결을 계기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언론의 자세에 대해 논의가 일었고, 그 결과로서 2012년 12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성폭력 범죄보도 세부 권고기준’을 발표하였다. 이에 의하면, 언론은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의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신상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며, 성범죄 사건의 본질과 관계 없는 피해자의 사생활 등을 보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범죄 유발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인식되도록 하지 않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다.

3. 일본과 한국의 비교

- 일본과 한국 모두 성범죄 등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익명보도하도록 해야 한다는 요청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

3) 자택에서 자고 있었던 아동을 안고 밖으로 나와 공터에서 강간하고, 범행 은폐 목적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죽게 한 범죄 사건에 대해, 범죄의 발생 원인·책임이 피해자의 양친(알코올 중독인 아버지, 게임 중독인 어머니)에게 있는 것처럼 보도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관련 정보(사진, 그림, 일기 등, 상해 부위의 영상)가 상세하게 보도되었다. 이에 대해, 피해자와 그 양친이 많은 신문사, 방송국을 상대로 민사 사건을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3월 19일 판결은,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를 일부 인정하였다.

◆ 임 병 렬 (한국 언론중재위원회 서울 제4중재부 중재부장)

제가 발제를 들으면서 생긴 의문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로 한국의 경우 익명보도를 원칙으로 하고 일본의 경우 실명보도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본의 경우 피의사실 ‘의혹’ 단계에서 피의자 실명을 보도하는 것과 피의사실 ‘확정’ 단계에서 피의자 실명을 보도하는 것에 차이를 두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일본 법조계의 경우 최근 대두되고 있는 초상권 문제에 대해 어떠한 견해로 접근하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일본에서 명예훼손 관련 판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명예훼손 관련 판례가 형성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Tomoyuki Kataoka (일본 변호사)

많은 질문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피의사실 보도가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것에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국민이 실명보도를 받아들이는 태도의 차이가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 국민의 경우 피의자의 신상에 대해 보도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들도 마찬가지로 언론이 피의자 실명을 보도하는 것을 법리적으로 문제가 된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 실명보도가 원칙으로 자리 잡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피의자의 실명을 보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확정판결 이후는 당연히 실명을 보도할 수 있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단, 일본에서 소년범의 경우 피의자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시각이 존재하여 소년법에 따라 소년 피의자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는 실명을 보도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판결이 난 경우에는 소년사범이라 할지라도 실명보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경우 피의자의 초상권도 피의자의 성명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본 방송에서는 피의자의 얼굴이 특별한 보호 장치 없이 그대로 방영되고 있습니다. 즉, 피의자의 프라이버시권이 보장되는 경우가 없다는 말입니다. 단, 피의자가 아닌 경우 개인의 초상권은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경우 실명보도가 국민과 언론 양측에게 모두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이에 관한 명예훼손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 관련 판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 Khan Muhammad Shafqat (파키스탄 언론평의회 위원장)

파키스탄의 경우 소년범에 대해서는 일본과는 조금 다른 논리가 채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피의사실이 공표될 경우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소년범에 대해서 어떠한 원칙이 적용되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인 가족의 경우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 즉 일본의 경우 공인 가족에 대한 보도는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 Tomoyuki Kataoka (일본 변호사)

일본에서 소년범일 경우 확정판결이 나기 이전의 단계에서는 실명을 보도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소년범일지라도 중대한 범죄 사안이거나, 해당 사안을 보도함에 의해 발생하는 공익성이 큰 경우에는 확정판결 이전에도 예외적으로 소년범의 실명을 보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소년사범의 경우라도 확정판결이 났다면 실명보도를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인의 가족에 대한 보도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경우 공인의 가족에 대한 판례가 매우 적게 존재합니다. 때문에 명확한 법적 논리가 구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공인의 가족은 완전히 개별적인 존재이므로 그들의 사생활은 최대한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공인 가족의 실명이 그대로 보도되는 경우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 I Made Ray Karuna Wijaya (인도네시아 언론평의회)

인도네시아의 경우 성적 피해자에 대한 보도를 할 경우 피해자의 이름을 장미, 자스민 등으로 치환해 언급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도입한다면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Christiana Chelsia Chan (인도네시아 언론평의회 위원장)

한국과 일본에서 테러리즘 보도와 같은 공익성이 높은 보도에 특별한 법적 제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Tomoyuki Kataoka (일본 변호사)

정부에서 언론에 대해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실질적으로 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특정비밀보호법’이라는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언론이 테러리즘 등 군사와 관련된 사항을 무차별적으로 보도할 경우 처벌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또 이 법률의 입법 단계 이전에도 정부가 ‘기자클럽’을 구성하여 실질적으로 언론의 정보를 통제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특정비밀보호법’ 이전에도 정부가 언론을 컨트롤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Some Observations on the Ethical Reporting on Suicides – An Austrian Perspective

Alexander Warzilek

Managing Director, Austrian Press Council, Austria

Reporting suicides is a sensitive and delicate issue. On the one hand, journalists should consider the **personality rights** of the deceased person as well as of the immediate family. On the other hand, detailed coverage of a particular suicide might spur a vulnerable person to take his or her own life, by the same means.

During the 1980s, Austrian newspapers stopped reporting on deaths by suicide where the deceased had jumped in front of a subway train in Vienna. The statistics suggest this led to a substantial drop in such incidences of suicide.

There has been considerable research and evidence to demonstrate the **effect of imitation** or ‘copycat’ suicides.¹⁾

Against this background, until a couple of years ago, the approach of Austrian newspapers was to act with restraint and to not report the fact that the death of a non-public figure was by suicide. Where a public figure had committed suicide, news coverage was cautious and discreet.

However, this approach has changed recently. Some newspapers – particularly tabloid newspapers – are reporting some deaths by suicide in a sensational manner.²⁾

1) http://www.kriseninterventionszentrum.at/dokumente/pdf3_Leitfaden_Medien.pdf, p. 3 et al.

2) The two free daily newspapers “Heute” and “Österreich” who compete aggressively with each other – mainly distributed in Vienna – as well as the tabloid newspaper “Kronen Zeitung” (its national coverage equals nearly 40%) are increasingly sensationalised in their reporting, including reporting on suicide.

The Austrian Press Council, the independent self-regulating institution of the printed press³⁾, has reacted to this recent development and introduced, in 2012, a new provision in its journalistic Code of ethics. This new provision considers the specific danger of imitation in the context of reports on deaths by suicide.

In its rulings⁴⁾, the Press Council has ascertained the following to be ***unethical*** **where death has been committed by suicide:**

- a) to cover the (private) life of the person in depth;
- b) to detail the manner of the death;
- c) to describe the state of the body of the deceased;
- d) to speculate on the reason for the suicide or to focus on a single reason (it is generally considered that there are always multiple factors at play in any suicide);
- e) to report in a sensational manner about a death by suicide on the front page of a newspaper;
- f) to reprint a suicide note or a suicide text message;
- g) not to respect the privacy of the next-of-kin of the deceased or to disturb the mourning process;
- h) to pressurise the next-of-kin of the deceased for an interview;
- i) to publish a picture of a person jumping to his or her death;
- j) to open an online forum on an article about the death by suicide of a non-public figure;
- k) to publish pictures of a suicidal person who is not a public figure.

However, the Press Council has also stated that deaths by suicide should not be considered a taboo; the issue is relevant to society and a general discussion about suicide is in the public interest. It takes the view that details of the method of the suicide and the course of events should be withheld, but that the telephone number of a helpline for people with suicidal thoughts and alternative options for dealing with personal crises should be published and highlighted.

3) www.presserat.at.

4) These rulings are a reminder and an instrument of admonition.

자살보도 윤리에 대한 오스트리아의 관점

Alexander Warzilek

오스트리아 언론평의회 이사

자살사건에 대한 보도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기자들은 사망한 사람과 직계 가족의 인격권을 고려해야만 한다. 더불어, 특정 자살사건을 자세하게 보도할 경우 심리적으로 취약한 누군가가 동일한 방법으로 모방 자살을 하도록 부추길 수 있는 점 역시 고려해야 한다.

1980년대 오스트리아 신문은 비엔나 지하철 선로에 뛰어드는 방식을 통한 자살사건에 대한 보도를 하지 않았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 이후 같은 방법을 통한 자살사건의 수가 급감했다.

더불어, 모방효과 혹은 모방자살이 있음을 증명하는 방대한 연구와 증거들이 있다.¹⁾

이러한 점을 감안해 몇 년 전까지 오스트리아 신문은 자살보도를 절제하고, 공인이 아닌 인물의 자살사건은 보도하지 않는 방식을 결의했다. 공인이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라도 언론보도는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했다.

그런데 최근 오스트리아 신문사들은 이러한 보도 방식을 지키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타블로이드 신문과 같은 몇몇 신문들이 일부 자살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²⁾

오스트리아 언론평의회는 출판·신문업계의 독립적인 자율규제기관으로서³⁾ 최근의 이

1) http://www.kriseninterventionszentrum.at/dokumente/pdf3_Leitfaden_Medien.pdf, p. 3 et al.

2) 상호치열한 경쟁을 하는 무료일간지 “Heute”와 “Österreich”(주로 비엔나에서 배부됨) 및 타블로이드 신문인 “Kronen Zeitung”(전국적으로 보급률이 40%에 이룸)는 자살보도를 포함한 선정적 보도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음.

3) www.presserat.at.

러한 동향을 묵인하지 않고, 2012년 언론윤리규범에 새 조항을 도입했다. 이 새로운 조항은 자살보도로 인한 모방자살의 위험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언론평의회는 평결을 통해⁴⁾ 다음의 사항을 비윤리적인 자살보도라고 확인했다.

- a) 자살자의 사생활을 자세히 다룬 경우
- b) 자살 방식을 자세하게 언급한 경우
- c) 시신의 상태를 묘사한 경우
- d) 자살한 동기에 대해 추정하거나 한 가지 이유를 중점적으로 보도하는 경우
(대부분의 자살은 그 동기가 복합적인 것이 일반적임)
- e) 신문 1면에 자살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경우
- f) 자살자의 유서 혹은 관련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보도하는 경우
- g) 사망한 사람의 가까운 친족의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거나 추도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 h) 사망한 사람의 친족이 인터뷰에 응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경우
- i) 자살을 시도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을 게재하는 경우
- j) 공인이 아닌 사람의 자살에 관해 논의하는 온라인 포럼을 개설하는 경우
- k) 공인이 아닌 자살자의 사진을 게재하는 경우

하지만 언론평의회는 자살로 인한 죽음이 터부 시 되어서는 안 된다고도 명시했다. 자살은 사회적인 이슈이며 이에 대한 일반적 담론은 대중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자살의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과정을 논의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하지만,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전화번호를 개설하고 개인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은 게재되어야 마땅하고 집중적인 조명을 받아야 한다.

4) 이는 자살 보도 세태에 경각심을 일으키고, 이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가짐.



**Some Observations on the Ethical
Reporting on Suicides
*An Austrian Perspective***



12. Nov. 2014

*Alexander Warzilek, Managing Director of the Austrian Press
Council*

The Austrian Press Council

- ***Independent self-control institution*** for newspapers and their websites
- No court/authority
- ***Association*** – all members come from the media sector
- Refounded 2010
- ***Everybody*** can make a ***complaint***

Statistics

	Number of cases 2011	Number of cases 2012	Number of cases 2013	Ethical infringements 2011	Ethical infringements 2012	Ethical infringements 2013
Total number of cases	80	145	155	9	13	16
"Der Standard"	10	11	19		1	
"Die Presse"	5	5	6			
"Heute"	15	12	14	2	2	
"Kleine Zeitung"	4	15	7			
"Kronen Zeitung"	14	16	31	2	4	8
"Kurier"	5	7	12			
"News"	3	1	4	1		1
"ÖÖNachrichten"	4	2	3			
"Österreich"	10	15	18	3	3	6
"Profil"	3	1	2			
"Salzburger Nachrichten"	2	5	4			
"Tiroler Tageszeitung"	3	4	4			

Mittwoch, 21. Dezember 2011 - ÖSTERREICH

8 THEMA DES TAGES



Das ist der 19-jährige Amokfahrer

Markus E.: Fußball-Fan, arbeitslos; er fuhr schon einmal einen Audi zu Schrott.

Hausbewohner

Sepp Bayer (56) erinnert sich: „Plötzlich kam die Waschmaschine ins Schleudern...“



Selbstmörder rast in Haus

**■ Er kündigte Tat auf Facebook an
■ Freunde glaubten ihm nicht ...**

Aus Liebeskummer wollte Markus sterben. Er schrieb über die Amokfahrt im Internet – doch niemand nahm ihn ernst. Da gab der 19-Jährige erst recht Gas.

Hollabrunn. Montagabend in Obritz im Bezirk Hollabrunn. Sepp Bayer (56) macht sich mit Freundin Lisa gerade am Küchentisch breit, sie unterhalten sich, er schreibt Rechnungen – für sein Abbruchunternehmen. Bald sollte ein neuer Auftrag, allerdings in eigener Sache, dazukommen.

Als ob eine Bombe in die Mauer eingeschlagen hätte

Sekunden später macht es einen fürchterlichen Krach, die Waschmaschine wird von der Wand gegen den Ess-tisch geschleudert, Freundin Lisa wird eingeklemmt, erleidet dabei aber nur leichte Verletzungen durch Holzsplitter im Gesicht und am Arm. Der Firmenchef und Hausbesitzer selbst kommt mit dem Schrecken davon.

Als er hinausläuft, findet er schnell die Ursache für den „Bombeneinschlag“ in seine Mauer: das Unfallwrack eines silbernen 3er-BMW. Hinter dem Lenkrad bzw. völlig verdreht unten bei den Pedalen: der Körper eines jungen Mannes, der nicht mehr zu retten war.

Liebeskummer – Freundin hatte Schluss gemacht

Rückblende: Wie Freunde des Lenkers Markus E. gegen-über ÖSTERREICH verraten, hatte der 19-Jährige den Wahnsinnsuizid davor auf seinem Facebook-Profil angekündigt. Der derzeit arbeitslose Fußball- und ATV-Saturday Night Fever-Fan wollte mit seiner Freundin zusammenziehen und hätte mit ihr eine neue Wohnung beziehen sollen. Am Montag war Schlüsselübergabe mit dem Bürgermeister von Großkadolz, doch Markus E. kam nicht zum Termin. Offenbar hatte seine Freundin mit ihm Schluss gemacht.



Bevor der FPÖ- und Rapid-Anhänger – dem schon einmal nach einem Alko-Crash mit einem Audi der Führerschein weggenommen worden war – sich ins Auto setzte, ging er ein letztes Mal ins Internet, um sich für immer zu verabschieden.

Mit 150 km/h ungebremst gegen eine Hausmauer

Die Reaktionen auf seine Zeilen: Erstens glaubte ihm niemand, und zweitens wurde Markus auch noch verspottet. Der 19-Jährige klapp-te den Laptop zu.



Abschied. Ins Internet stellt Markus ein letztes Kussfoto mit seiner Freundin und fährt danach mit 150 km/h gegen die Mauer. Vom 3er-BMW bleibt nur mehr ein Wrack. Der 19-Jährige ist sofort tot.

Eineinhalb Stunden soll der Selbstmordkandidat mit seinem BMW schon durch die Gegend gefahren sein, als er das Gaspedal endgültig bis zum Anschlag durchdrückte. Laut ersten Ermittlungen knallte der junge Nieder-österreicher mit 150 km/h ungebremst gegen die Hausmauer von Sepp Bayer.

Markus E. war auf der Stelle tot. Weil es aus dem Motorraum qualmte, kam Nachbar Franz Weiß (64) mit dem Feuerlöscher zum Unfallort. Die Sorge des Anwohners war be-rechtigt: Laut Sicherheitsdi-

rektion war eine Gasleitung beschädigt worden, die da-nach sofort abgedreht wurde. An der Unfallstelle stan-den neben der FF Obritz auch die Feuerwehren Hadres und Mailberg mit 56 Mann im Einsatz. Viele der Feuerwehr-leute wurden kreidebleich – sie kannten den Kamikaze-fahrer und mussten psycho-logisch betreut werden.

Am nächsten Tag standen Kerzen an der Unfallstelle – auf Facebook trauern jetzt die Freunde, die ihm nicht geglaubt hatten.

Verena Höher, Roland Kopt

Suicide by a gas explosion

Heute

KEIN MORGEN OHNE HEUTE Mo., 28.4.14 | Nr. 2420 – Seite 23

Muppets® im Kino
Gratis zu Kermit
100 Tickets,
100 Goodies
gewinnen

Viel **SONNE**
Die Woche beginnt
schön, erst am
Nachmittag Wolken
11° – 22° – S. 2

Mariahilfer Straße 182,
der Tag danach: Vom
gesprengten Haus blieb
fast nur mehr ein Ruine.

Dominik
Seh, (19):
Er jagte
das Haus
in die Luft.

**„Heute ist mein
letzter Tag ...“**

■ Kein Job, Freundin im 3. Monat schwanger
■ Er rief Kumpel an und sprengte Haus – S.10

Montag 28.04.
-50%
In allen 27 Gastronomielokalen!
LUGNER CITY

Testen Sie
Toyota Hybrid mit
den Experten!
Infos & Anmeldung unter:
toyota.at/hybrid-testen

**BONUS
WOCHEN**
von 5.–24.5.

TOYOTA

fahrtechnik



Jahrelang gehänselt: Fleur Bloemen

Vor den Augen ihrer Mitschüler warf sich die 15-jährige Niederländerin vor den Zug. von TWITTER

*Ich war anders als die anderen, anders als der Rest (...)
Es begann als ein Spiel.
Es lief aus der Hand.
Und endete für mich in einer Hölle.*

Zeilen der Verzweiflung

Fleur (15) wurde gemobbt und schrieb darüber – ihren Hilferuf hörte niemand.

MARKUS ZÖTZLER

Es begann als ein Spiel. Es lief aus der Hand. Und endete für mich in einer Hölle.

Drei Jahre nach diesen Zeilen setzt Fleur Bloemen (15) im niederländischen Meppel den traurigen Schlusspunkt. Dienstag, der Heimweg wäre ein kurzer gewesen, springt sie vor den Augen von Mitschülern über einen Zaun und wirft sich vor den Zug. Fleurs eindringliche Zeilen, verfasst im Rahmen eines Poesie-Wettbewerbs, blieben unerhört.

„Wir wussten, dass sie aufgrund ihres Aussehens gemobbt wurde. Sie ist schon ein bisschen dicker gewesen“, sagt ein Mitschüler jetzt der niederländischen Tages-

zeitung ADZ. „Sie wurde immer ‚Dicke‘ genannt“, sagt ein anderer. In Fleurs Schrif-

ten, ob es ein Zusammenhang zwischen Mobbing und Suizid gibt. Viele

schrieben Briefe, den Fleur leitend über-

Ribberink (20) das Leben. Online wurden unter seinem Namen gefälschte Nachrichten veröffentlicht. „Ich bin ein Verlierer und ein Homo“, stand dort. Auch Tim hinterließ Zeilen der Verzweiflung, adressiert an seine Eltern: „Mein ganzes Leben wurde ich verspottet, gemobbt und ausgegrenzt. Ich hoffe, ihr seid mir nicht böse. Auf ein Wiedersehen!“

Jetzt reisen Psychologen durch das Land und besuchen Schulen.

Ihre Mitschüler hänselten sie wegen einer Hautkrankheit

Mobbing trieb 13-jähriges Mädchen in den Selbstmord

Eine grenzenlos verzweifelte Kinderseele, die keinen anderen Ausweg mehr sah, als den eigenen Tod. Unfassbar ist die Tragödie, die sich in Linz abgespielt hat. Ein 13-jähriges Mädchen war laut Freunden in der Schule gemobbt worden – und erhängte sich.

Die Mutter saß nichtsahnend im Erdgeschoß, während sich ihre Tochter im Stiegenhaus im ersten Stock

das Leben nahm. Kurz davor war Elisabeth (13) am Montag von der Schule heimgekommen. Sie hatte sich in den oberen Stock verkrochen. Dann schlang sie sich einen Schal um den Hals, wickelte das andere Ende um das Stiegengeländer, ließ sich fallen. Um 15.45 Uhr wurde Elisabeth tot aufgefunden. Ihre Mutter brach zusammen.

Wie viel Leid muss einem 13-jährigen Kind wi-

derfahren, bis es zu so einer Verzweiflungstat kommt? Wegen einer Hautkrankheit soll das Mädchen von Mitschülern gemobbt worden sein. Die Beleidigungen verletzten es, schon mehrmals hatte es im Beisein ihrer Mama damit gedroht, sich umzubringen. „Die Mutter machte sich große Sorgen, sprach mit dem Direktor der Schule, bat darum, dass die Lehrer mit den anderen Kindern reden, sie dazu bringen, mit dem Mobbing aufzuhören“, so ein Freund. Doch es war zu spät. J. Gaderer, J. Hagerer, M. Schütz

ToiToiToi
GLAUB ANS GLÜCK.

Ziehung vom 29. 1.

65028

Glückssymbol „Rauchfangkehrer“
Ohne Gewähr

Picture of a jump: ethically condemned

Seite 18

ÖSTERREICH

Freitag, 11. Juli 2014



Fotos: www.haberturk.com



Urlauber (25) stürzte in Tod

Schockierende Tragödie mitten in Istanbul um einen Urlauber aus Österreich: Offensichtlich volltrunken torkelte der junge Mann von einer gegenüberliegenden Bar in sein Hotel, zog sich bis auf die Unterhose aus und stieg auf das Dach. Zeugen alarmierten die Einsatzkräfte. Doch sämtliche Versuche, den jungen, lebensmüden Mann über eine Stunde lang zur Vernunft zu bringen, schlugen fehl. Während die Feuerwehrmänner das Sprungkissen aufbauten, stürzte sich der seit Sonntag in der Türkei urlaubende Student in die Tiefe. Für den 25-Jährigen gab es keine Rettung.

„Bild“ and „Abendzeitung“ Munich



Satirical Magazine Titanic:
Suicide of German soccer-
goalkeeper Robert Enke



Train conductor: "I have fooled Mr. Enke."

Death of Robin Williams

24

SOCIETY AKTUELL

Star mit Gürtel erhängt
Seine Frau war nebenan

**Williams:
Selbstmord
wegen Geldnot**

Ehefrau Susan unter Schock
Als Williams sich erhängte, schlief Susan in einem anderen Zimmer. War die Ehe am Ende?

Polizei-Sprecher über Selbstmord.

Medienrummel vor Williams-Haus.

Letzter Ausweg: Robin Williams setzte am Montag seinem Leben ein Ende. Er wurde 63 Jahre alt.

2 Millionen-Scheidungen, Serien-Aus & Immobilien-Flop

Star soll unter Karriere-Tief gelitten haben. Und besuchte die Anonymen Alkoholiker.
Details. Hollywood trauert um einen Großen: Robin Williams († 63) setzte am Montag seinem Leben ein Ende. Mit einem Gürtel an der Tür seines Schlafzimmers. Ehefrau Susan Schneider schlief im Zimmer nebenan, be-

von Marsha Garces – kosteten ihn über 30 Millionen Euro. Deswegen stand auch seine „Villa of Smiles“ in Napa seit einem Jahr zum Verkauf – aber ohne große Nachfrage. „Eine Scheidung reißt dir das Herz durch die Briefftasche raus“, gestand Williams im Parade-Magazin. Testament. Bereits 2009

30 Millionen für Ex-Frauen

Wie viel ist übrig vom

◆ Balázs Weyer (헝가리 편집인협회장)

헝가리의 자살률은 세계에서 높은 편에 속하기에 자살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언론의 자살에 대한 보도가 자살 위기를 겪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위기를 겪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헝가리에서는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돕는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핫라인에 대한 정보를 언론에서 자살보도와 함께 전함으로써 미디어가 자살예방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자살 예방 핫라인과 자살 보도방식이 오스트리아에도 있는지 있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Alexander Warzilek (오스트리아 언론평의회 이사)

오스트리아 역시 비엔나에 있는 병원에서 자살 예방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핫라인들의 정보를 자살관련 보도에 포함시키는 것 역시 자살 위기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긍정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이러한 사항들을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의 예방기구 관련 보도는 법적 문제라기보다는 윤리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살 예방 관련 보도는 오스트리아의 경우 많지 않습니다. 독일의 큰 언론사의 경우 예방 핫라인 관련 보도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지만, 오스트리아의 경우 아직 시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